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취소 사전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9. 30.

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12조, 행정절차법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송달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김○하	08. 8. 22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 취소 사전 안내	필수 초기대면 상담일에 미방문 (출석통지 2회이상 불응 및 연락두절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 취소	폐문부재	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9길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 9. 30. ~ 2026. 10. 14.(15일간)
5. 기타 사항은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수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박재현(Tel. 031-231-786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